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45
----------	-------

발의연월일 : 2018. 9. 6.

발의자 : 이완영 · 김승희 · 손금주
황주홍 · 주광덕 · 김명연
유민봉 · 송언석 · 김태흠
곽대훈 · 강석진 · 어기구
김광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3조의2(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